
유통산업의 야간노동 확산에 대한 법제도 개선안 모색 토론회

– 유통법개정을 통한 쿠팡 규제 방안

일시 | 2021년 11월 11일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9 간담회실

주최 | 이동주의원실, 송옥주의원실, 양의원영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프로그램

좌장 김성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장)

참가자 소개 및 인사

발제

- | | |
|----------------------------|---------------------|
| 유통산업의 야간노동 확산 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 이희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
| 영업시간 제한을 통한 야간노동 근절 법개정 방향 | 송봉준 (국민입법센터 변호사) |

토론

- | | |
|--------------------------|-------------------------|
| 유통시장 변화에 따른 중소상공인 보호의 필요 |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
| 유통산업의 변화와 유통법의 한계 |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방향 | 양창영 변호사 |
|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산업부 담당자 |

목차

발제

유통산업의 야간노동 확산 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 이희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영업시간 제한을 통한 야간노동 근절 법개정 방향

- 송봉준(국민입법센터 변호사)

토론

유통시장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의 필요

- 이성원(한상총련 사무총장)

유통산업의 변화와 유통법의 한계

- 정수정(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방향

- 양창영 변호사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산업부 담당자

인사말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유통산업의 야간노동 문제를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회 토론회 개최가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님, 이동주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양이원영 의원님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유통산업 야간노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고민해주시고, 오늘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한상총련, 국민입법센터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쿠팡에서 1년 4개월간의 야간노동을 하다 산재로 숨진 고 장덕준 님의 유족분들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주시고, 자식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주시는 부모님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2021년입니다. 노동 존중을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에 고 장덕준 님과 같은 산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야간노동을 주제로 토론회를 하게되니 노동운동이 더 치열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가 놀랄 정도로 유통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통배송시스템이 유통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노동 형태도 바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통판매직은 줄어 들고 물류센터, 유통배송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질입니다.

처음 쿠팡이라는 기업이 등장했을 때, 쿠팡이 가져온 물류의 혁신, 배송의 혁신, 유통의 혁신이 세상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시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이 드러났고, 쿠팡이 촉발한 배송 속도 경쟁은 야간노동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유통배송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혁신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70년대, 전태일 열사가 개선하고자 했던 섬유산업에서의 야간노동, 80년대 90년대 제조업에서 확산한 야간노동의 문제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통산업에서는 혁신의 이름으로, 편리라는 이름으로 야간노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2의 발암물질이라는 야간노동은 사회적으로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꼭 필요한 업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야간노동의 이런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알려진다면 소비자도, '내가 차라리 물건을 좀 더 늦게 받겠다.' '내가 차라리 비용을 더 내겠다. 야간노동을 줄여달라' 말씀하실 겁니다. 국민과 함께 야간노동을 줄이기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사회적 여론을 만드는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통업에서 확산하는 야간노동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 방기홍

안녕하십니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 방기홍입니다. 금일 '유통산업의 야간노동 확산에 대한 법제도 개선안 모색 토론회 - 유통법 개정을 통한 쿠팡 규제 방안'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양이원영 의원님, 그리고 을지로위원회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로 인해 유통산업의 생태계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비대면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도 그 덩치를 크게 불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쿠팡입니다.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그간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복합쇼핑몰 등을 저지하기 위해 때로는 목숨을 건 단식투쟁도 마다하지 않으며 온몸으로 저항해 왔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대기업들은 흠발로 우리 산업에 들어와 탐욕적으로 시장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의 유통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유통 대기업들마저 이 흐름에 동참해 기존의 규제들을 모두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몫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모여 지난 9월 7일 '쿠팡시장침탈저지 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투쟁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참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이뤄져 왔습니다. 자영업자는 물론, 노동자들과 시민단체, 정계와 학계 등이 모여 머리를 맞대 왔습니다. 치열한 고민 끝에 도출된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야간노동 확산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제도 개선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탐욕적으로 시장을 침탈하고 있는 쿠팡과 플랫폼 대기업들에게서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진성준입니다.

오늘 송옥주, 이동주, 양이원영 의원님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유통산업의 야간노동 확산에 대한 법제도 개선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님과 발제에 나서주신 이희정 서비스연맹 정책실장님, 국민입법센터 송봉준 변호사님 그리고 토론에 함께해주신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님, 양창영 변호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소비문화가 정착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시장은 얼어붙은 반면,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유통산업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의 선봉에는 쿠팡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온라인 유통의 약점을 보완했고, 더 나아가 새벽배송까지 진출하며 온라인 유통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벽배송을 통해 상품을 저렴하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새벽배송의 뿌리에는 물류창고 노동자와 택배 배송기사의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쿠팡 철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한 故 장덕준님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야간에 진행하면서, 냉난방도 되지 않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은 물류창고 직원들을 상근직 형태로 일을 시키면서, 현실에서는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으로 연속 7일 이상의 야간근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 내

불법·편법적 요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국토부 등 유관 정부기관과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유럽의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야간노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통업체 종업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가정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 「상점영업시간규제법」을 195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노동자의 휴식권을 위해 주중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독일 수면의학협회는 야간 교대노동자의 80%가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일반적인 노동자에 비해 평균수명이 13년이나 짧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RAC)는 생체리듬을 교란하는 야간노동이 자동차 유해가스나 유해물질에 속하는 다이옥신보다 높은 단계의 발암요인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과도한 배송 속도경쟁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과 같이 무점포 판매업의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제조업 분야는 새벽시간(0~4시) 공장가동이 멈추고 있지만, 유통업은 점차 야간근로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이은 쿠팡 노동자 과로사, 코로나19 집단 감염, 덕평 물류센터 화재, 쿠팡이츠 점주 사망, 아이템위너 갑질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은 ‘쿠팡불매’, ‘쿠팡탈퇴’를 택하며 사회적 소비의 사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형태로 근로자를 새벽의 속도경쟁에 내모는 기업운영 행태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유통산업에서 야간노동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특히 물류센터 근로자의 노동문제 및 처우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 이동주입니다.

최근 소비추세의 변화와 기술으로 유통산업의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을 계기로 비대면으로 변화하던 소비패턴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산업구조의 변화는 온오프라인 간 경계를 허물어뜨렸고 인공지능 등의 기술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유통플랫폼 출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성장 기조와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는 유통업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영업기반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패턴의 변화로 온라인 플랫폼은 급성장한 반면 대중소 유통업간 성장 격차는 확대되고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소유통업의 위축은 서민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대중소 유통업간의 상생협력을 이끌어내는 유통산업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저는 유통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대중소 유통업의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소유통업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을 최근 발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제가 발의한 법안과 동일선상의 문제인식

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유통시장의 변화로부터 노동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법논의를 통해 전체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신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상총련 등 노동, 상인단체와 송옥주의원님, 양이원영의원님, 을지로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경기 화성(갑) 출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유통산업의 야간노동 확산에 대한 법제도 개선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님, 양의원영 의원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님 그리고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강규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16년 14%밖에 되지 않던 온라인 유통 점유율이 2021년 37%로 2.5배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유통산업의 온라인화는 배송 서비스 속도 경쟁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새벽배송과 당일배송이 증가하면서 유통산업의 야간노동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통배송노동자는 대부분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열악한 처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제정되어 택배노동자는 보호조치가 마련되었지만, 유통배송노동자의 경우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유통배송노동자들의 60%가 월 26일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하루평균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호조치를 넘어 배송속도 경쟁에서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야간노동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물류센터의 야간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유통시장에서 경쟁적으로 행해지는 새벽배송업무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편리와 혁신을 이유로 노동자의 건강을 담보로 한 속도 경쟁은 이제 지양해야 할 때입니다. KBS의 택배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의 71%가 택배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향상되기 위해서라면 배송지연을 감수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야간영업 시간 규제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의 동의하에 진행되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비롯하여 유통배송노동자 보호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통산업의 야간노동 확산에 대한 법제도 개선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존중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양의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의원영입니다.

쿠팡이 등장하고 온라인 유통산업은 풀필먼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로켓 배송까지 늘어나면서 전통 유통업인 마트, 백화점 등의 점유율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온라인 비중은 더 커졌습니다.

유통배송 종사자 수 역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큼 처우까지 나아졌는지엔 의문입니다. 유통배송 노동자 대부분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신분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특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업무강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택배와 같이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에 노출됐고 최근 과로사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유통법은 노동자 건강권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대형점포들 간 거리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무점포판매에 대해선 정의 외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유통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야간노동을 줄이고 무점포판매업 등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해 노동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를 검토해 야간노동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심도 깊은 토론으로 실효적인 법제도 개선안이 마련되기 바랍니다. 저도 국회에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토론회 주최에 함께한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를 비롯한 행사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발제 1

유통산업의 야간노동 확산 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 유통법개정을 통한 쿠팡 규제방안

이희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쿠팡의 등장은 유통산업의 변화를 상징한다. 유통업체들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빠른 배송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쿠팡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문제, 플랫폼을 활용한 무분별한 시장진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제 쿠팡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도 ‘혁신’이라는 찬사보다 ‘규제’의 필요가 강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물류센터, 새벽 배송에서의 야간노동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와 노동자, 사용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야간노동을 줄이려고 노력해왔다. 이미 제조업에서도 야간노동은 주요 이슈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유통배송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유통업에서의 야간노동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야간노동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노동법을 통한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야간노동이 유통산업에서 증가하고 있고, 배송노동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대거 종사하고 있는 조건에서, 노동법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 현재 대형마트와 같이 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야간노동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유통시장의 변화와 야간노동 확대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유통법을 통해 쿠팡과 같은 무점포판매업에 대한 영업시간을 규제해 야간노동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 방안은 야간노동 축소뿐 아니라 무점포판매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낼것이라 기대한다.

1. 유통산업 변화

- 쿠팡의 등장은 유통산업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물류창고에 물건이 바로 출고되어 다음 날 문 앞까지 물건이 배송하는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전통 유통업인 마트, 백화점 등의 점유율을 지속해서 감소하고 온라인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16년 14%밖에 되지 않던 온라인 유통 점유율은 21년 7월 현재 유통업에서 정의하는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전체의 36.9%에 달한다. 온라인 유통시장에서는 쿠팡, 네이버에 이어 SSG.COM이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백화점, 마트 할 것 없이 전통 유통업체들도 온라인 중심으로 사업 전환을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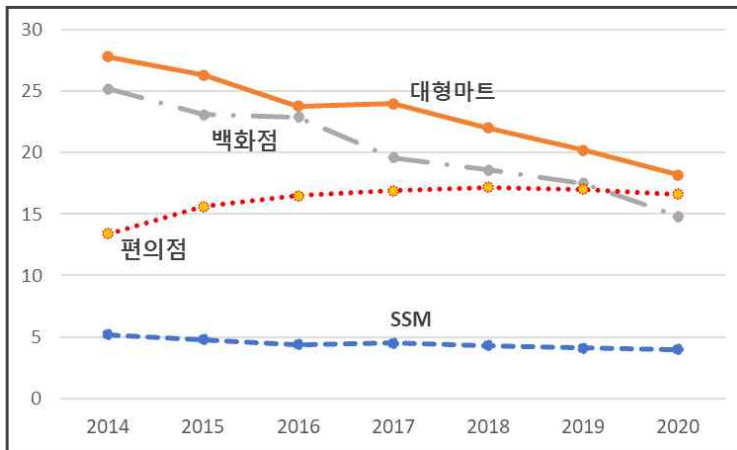


그림 1 자료 : 산업자원부, (2020년은 상반기)

□ 온라인유통(쿠팡, 쓱닷컴,마켓컬리 등 무점포, 전자상거래)
점유율 변화

(단위: 조원, %)

| 구분 | '16 | '17 | '18 | '19 | '20 | 21.1~7 |
|----------------|-------------|-------------|-------------|-------------|-------------|-------------|
| 총소매 판매액(A) | 379.29 | 394.42 | 416.13 | 423.58 | 416.77 | 292.53 |
| 온라인 판매액(B) | 52.98 | 73.18 | 87.36 | 101.36 | 127.07 | 108.02 |
| 비중(B/A) | 14.0 | 18.6 | 21.0 | 23.9 | 30.5 | 36.9 |

* 자료: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www.kostat.go.kr)

- 유통산업의 온라인화는 노동시장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간 백화점, 대형점포 노동자들은 감소했지만 체인점, 무점포소매업의 경우 고용이 25.4% 늘어났다. 유통배송 노동자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팀에서 진행한 '유통산업 물류 화물차주 등 종사실태조사'에서는 물류센터에서 점포, 점포에서 소비자, 물류센터에서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을 유통배송 서비스종사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수를 10만 명(도소매업 물류 5만, 요식업 물류 5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쿠팡커머스, 배민의 B마트 등이 생겨나면서 유통배송 서비스는 골목까지 진출하는 추세이다.

유통업 소매업 하위 업태별 종사자 수 추이: 1998~2018(단위: 명, %)

| | 백화점 | 기타 대형종합 소매업 | 슈퍼마켓 | 체인화 편의점 | 기타 음·식료 품 위주 종합소매업 | 무점포 소매업 |
|------------------------|--------------|-------------------|-------------|--------------|-----------------------------|-------------|
| 1998년 | 39,575 | 21,164 | 28,071 | 6,743 | 229,903 | 111,561 |
| 2003년 | 32,021 | 56,757 | 52,254 | 33,615 | 176,504 | 202,848 |
| 2008년 | 18,938 | 70,944 | 63,824 | 53,486 | 146,507 | 186,423 |
| 2013년 | 15,780 | 72,648 | 80,369 | 97,478 | 132,862 | 189,533 |
| 2018년 | 13,329 | 66,586 | 110,585 | 185,426 | 91,273 | 233,682 |
| 2008- 18 증감 | -29.6 | -6.1 | 73.3 | 246.7 | -37.7 | 25.4 |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 조사(각 연도), 유통산업 노동환경 및 노동시장 변화 대응과제, 김종진

2. 야간노동 실태

1) 유통업의 물류센터 노동문제

(1) 현황

- 쿠팡이 시작한 유통시장의 풀필먼트 서비스는 유통, 물류 업계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이마트는 온라인 유통을 담당하는 SSG.COM을 법인분리,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온라인 유통을 강화하고, 4년간 1조 원을 투자해 네오를 5곳으로 확대해 쿠팡과 같이 전국단위의 배송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한 고 장덕준님의 질병판정서 내용을 보면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잘 알 수 있다. 사실상 상시직인데 일용직으로 계약(쿠팡 인력 고용 플랫폼)하여 일하고 있으며, 야간시간에 냉난방 시설도 없는 창고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지속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 쿠팡 칠곡 물류센터 고 장덕준님 산재사고 현황 (질병판정서 내용정리)

- 사고내용 : 20년 10월 12일, 야간근무 마치고 욕실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
- 근무형태 : 비정규직(일용직계약), 고정야간 근무
- 근무내용 : 월터스파이더 담당(물류센터 출고 지원업무, 타 업무지원, 부자재운반)
- 근무시간 : 19:00 ~ 04:00 (휴게시간 30분*2회) / 발병전 1주(62시간 10분), 발병 전 2주에서 12주간(주당 평균업무시간 58시간 18분)
- 과중한 업무 : 야간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업무(박스포장, 운반), 냉난방 설비없음

- 물류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데, 특히 주문이 집중되는 야간에 업무가 더 많다. 쿠팡을 필두로 풀필먼트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배송 서비스 속도 경쟁이 벌어지면서 야간노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배달 속도경쟁이 오토바이 사고 증가로 이어졌듯이 유통시장의 배송 속도경쟁에는 야간노동이 있음) 물류센터 자체뿐 아니라 배송 노동에서 야간노동의 증가도 심각하다.

- 쿠팡의 경우 고 장덕준님과 같은 일용직 인력 외에도 3개월, 6개월, 9개월, 12

개월 단위의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이마트의 경우 물류센터 네오 안에 피킹, 패키징 업무를 파견업체에 맡기고 있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어 차라리 야간노동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림 2. 이마트, SSG의 PP(picking& packing)센터

(2) 처우 개선 방안 모색

① 유통산업의 정의와 분류

| 유통산업 | | 정의 | 세분류 | 유통회사 예시 |
|--------|--------|---|-------|-----------------------------|
| 유점포 판매 | 대규모 점포 |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결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며,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 | 대형마트 |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
| | | | 전문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
| | | | 백화점 | 현대, 신세계, 롯데, 갤러리아, nc, 애경 등 |
| | | | 쇼핑센터 | 뉴코아아울렛, 롯데아울렛 등 |
| | | | 복합쇼핑몰 | |

| | | | |
|---------|---|--------------------------|---|
| 준대규모 점포 |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 슈퍼마켓 (47121) |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GS리테일, 농심 메가마트, 뉴코아 김스클럽마트 등 |
| | |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47129) | |
| 체인사업 |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 점포에 대하여 직영하거나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직영점형 | (편의점) 이마트24, 세븐일레븐, GS25, CU,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StoryWay 등 (기타) 다이소, 화장품(올리브영 등) |
| | | 프랜차이즈형 | |
| | | 임의가맹점형 | - |
| | | 조합형 | - |
| 무점포판매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 | 전자상거래 (온라인유통)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소매 형태로 대형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도 동시 운영 (ex.마켓컬리, SSG, 쿠팡 등) |
| | | TV 홈쇼핑 | 방송 매체를 통한 소매 업태의 하나로 쇼 호스트의 상품 설명, 모델들의 시연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유통 채널 |
| | | 기타 | 방문판매 및 가정 내 진열판매, 다단계판매, 전화 권유판매, 휴대폰·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

유통산업 물류 화물차주 등 종사실태,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팀

- 유통법에서의 무점포판매 관련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체인사업의 발전시책
 2. 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
- 이하생략 -

- 산업자원부령에서 무점포판매 관련 조항

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 2. 23., 2008. 3. 3., 2009. 10. 14., 2013. 3. 23., 2013. 4. 23.>

1. 방문판매 및 가정 내 진열판매
2. 다단계판매
3. 전화 권유판매
4. 카탈로그판매
5. 텔레비전홈쇼핑
- 5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통한 상거래
6.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 6의2.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
7.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판매
8.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 유통법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대형·준대규모 점포의 거리를 제한하는 등의 여러 규제조항을 두고 있는데 무점포판매에 대해서는 정의 외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②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 필요성

- 배송속도 경쟁으로 물류센터, 배송 노동에서 야간노동 문제, 장시간 노동(특수고용)도 경쟁적으로 증가해 온라인유통 종사자들의 건강권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

유통시장의 주도권이 온라인 판매로 넘어가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대형마트만으로 한정할 수도 없다. 현재 물류센터와 배송시스템은 유통물류의 혁신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 착취를 통한 이윤 창출에 지나지 않는다.

-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기업인 보호를 위해서도 무점포판매(온라인 유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저임금 노동력에 의지한 배송 경쟁을 조정하고 기술발전을 중심으로 한 유통물류 혁신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개선 방안

○ 무점포 판매업의 영업시간 규제

- 노동법에서 야간노동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근본적 조치가 지향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무점포판매의 경우 0시~4시까지는 영업(물류창고에서의 분류, 배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0시~4시의 영업(물류창고에서의 분류, 배송) 시간제한은 △과도한 배송 속도경쟁에서 노동자를 보호, △유통시장의 온라인화의 속도 조절을 통해 중소기업인들을 보호, △유통물류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야간노동이 심각했던 제조업 분야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사 대타협으로 0시부터 4시까지 공장 가동을 멈추었다. 이는 자동차 협력업체로 확대되어 제조업 분야 야간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당시 회사는 생산량이 줄 것을 우려했고, 노동자들은 임금 하락과 노동강도 증가를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노동자들은 일과 생활의 양립을 찾았다.

○ 현행법 내에서의 조치

- 쿠팡의 경우 사실상 상용직을 일용직처럼 고용하면서 연속 7일 이상의 야간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쿠팡플렉스의 경우 플랫폼노동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우회해 개인 차량으로 택배를 배송하는 방식으로 불안전 고용을 확산하고 있다. 마트 배송노동자와 물류창고에 파견직들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의심된다. 물류창고의 냉난방 시설 문제, 휴게시설 부족 등 산업안전 보건 조치도 미흡하다. 고용노동부, 국토부, 산자부 등에서 유통산업 내에서의 이런 불법, 편법적 요소들에 대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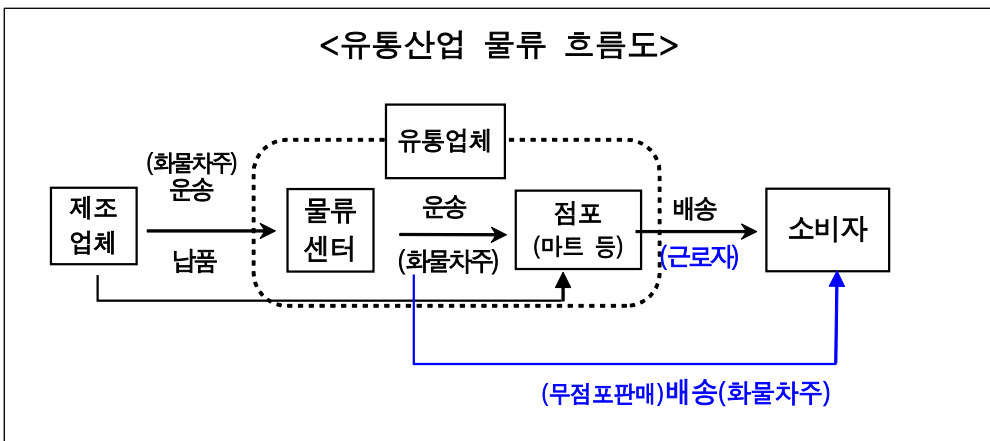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2) 유통배송 노동자

(1) 현황

- 유통배송노동자는 대부분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열악한 처우에서 일하고 있다. (화물차주, 마트 배송: 특수고용 / 쿠팡플렉스: 플랫폼노동 / 쿠팡친구: 기간제 다수) 마트 배송노동자는 사실상 마트의 업무지시에 의해 일하고 있지만, 하청업체 또는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계약관계를 체결. 업무도, 계약 형태, 노동조건도 택배와 유사하다.

-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업무강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택배와 같이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과로사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하였다. 택배 노동자의 경우 노동조합과 정부의 노력으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제정해 택배 산업을 규정하고, 종사자 보호조치도 강화했지만, 유통배송노동자의 경우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노동을 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근본적 보호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통산업 물류 화물차주 등 종사실태,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팀

- 지난 6월 서비스연맹에서 실시한 배송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트 배

송노동자들의 60%가 월 26일 이상, 84%가 하루평균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마트 물류창고(네오)를 중심으로 심야 배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야간 배송노동자의 경우 저녁 9시 30분경 출근해 다음 날 아침까지(일이 많은 날은 12시간 이상 근무) 일하고 있었다. 코로나로 물량이 급증하면서 한 달에 2번만 쉴 것을 강요받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설문조사에 응답한 30%가 부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부업을 고려한다면 배송노동자들의 실제 노동시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월 200~350만 원을 벌고 있다고 답했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배송노동자는 운송 횟수, 배송비가 정해져 있어 월급 편차가 크지 않았다. 대부분 월 300만 원 후반에서 400만 원 초반대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며, 비용으로 100~15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 지입제의 특성상 차량을 구매 방법(할부, 일시불)에 따라 비용도 개인마다 특정할 수는 없었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기본비용은 부가세, 유류비, 화물공제회비, 지입료, 관리비(지역별 차이), 세차비, 차량 관리비, 차량할부비, 자동차보험 등이 있었다. 그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용차비(경조사, 사고 발생, 병원, 지정 휴무 외 휴무시)가 발생하고 있었다.

- 이마트 네오에서는 심야 배송(저녁 9시 30분 출근)의 경우 장거리 배송을 중심으로 월 26일 이상 일하게 되면 월 5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코로나로 배송물량은 증가했지만, 택배와 달리 배달 건수로 비용을 받고 있어서 수입은 늘어나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 휴게시간, 식사 시간이 부족했다. 주어진 휴게시간에도 쉴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인터뷰 과정에서도 화장실 이용, 휴게공간의 부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대부분 노동자가 차량에서 대기 겸 휴식을 취한다고 했다. 배송물량이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정시에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식사 시간이 부족해지고, 일을 서둘러 하게 되면서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고 했다. 대부분 노동자가 근골격계질환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기적 건강검진이나 병원치료를 받고 있지 못했다. 이유는 별도의 휴가를 내는 경우 용차비용이 부담이 되어서라고 답했다.

(2) 처우 개선방안

① 원청의 사용자성

- 마트 배송노동자들은 대형마트가 지시하는 시간, 동선, 장소에 따라 일하고 대형마트가 정한 장비와 복장으로 일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의 지위로 운송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계약 내용과 근무 형태를 살펴보면 사실상 대형마트의 지휘와 통제에 따라 일을 하는 근로자로 평가할 수 있다.

- 원청의 지휘와 통제에 따라 일하는 근로 형태로 볼 때 마트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해 노동법에서의 보호하는 방안, 마트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마트 원청의 책임성을 높여 계약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② 생활물류서비스 노동자로 포괄해 종사자 보호 의무 강화

- 현행 생물법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택배서비스종사자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유통배송 서비스 노동자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포괄함으로써 유통배송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 아래 표의 개정안과 같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정의에만 포함해도 생물법의 「제6장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 향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다만, 택배 노동자와 같이 6년간 계약갱신권, 원청의 운송사 관리 감독 의무 등의 내용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법안에 유통배송 영역을 별도로 규정해 다루어야 할 것이다.

-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 개정방향

| 현 행 | 개 정 안 |
|--|--|
| <p>6.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p> <p>가. 택배서비스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p> | <p>6.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p> <p>가·나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 <p>다. 유통배송서비스종사자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에서 상품 또는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p> |

③ 불공정 계약

- 계약서의 내용에서 배송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등 노동3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배송업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배송업무를 못하는 날에 대한 용차 등 비용을 부담하고 하고, 위탁계약 해지 시 후임자를 구해 온다든지 업무인수인계 기간까지 출근을 강요 등의 불공정계약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다. 배송노동자와 중간 물류회사와의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고, 표준계약서 등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④ 무점포판매업 영업시간 규제

- 배송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기위한 여러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유통시장에서 배송속도 경쟁이 계속된다면 야간노동 자체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새벽배송업무는 유통물류센터에서 시작된다. 앞에서 제기한 유통물류센터의 새벽영업시간이 일부 제한된다면 유통배송노동자들의 야간노동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3. 소비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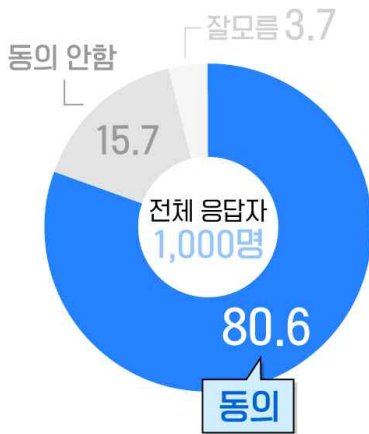
“4시간 먼저 주문하기”

“4시간만 더 기다리기”

-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때 소비자의 반응은 흥미롭다.

K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21년 1월 23일~ 1월 25일까지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의 80.6%가 택배기사 근로 시간 단축에 동의했고, 70.8%가 배송지연도 감수하겠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3.6%는 요금인상에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51%는 500원(20% 인상)까지 요금인상을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택배비 인상 수반을 조건으로 51.5%가 노동자 처우 개선을 들었다.

근로시간 단축 (%)



배송지연 감수 여부 (%)



자료 KBS 택배관련 여론조사 그래픽 김현수



- 소비자는 편리를 추구하지만, 사회적 소비를 하는 능동적 주체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에서 보여준 설문 결과 외에도 쿠팡의 노동실태가 알려지면서 벌어진 앱 탈퇴 운동이나 국민청원 등의 사례가 이런 소비자의 적극적 소비 행태를 잘 보여준다.

- 우리나라처럼 배송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는 없다고 한다. 지금은 유통배송시장에서 노동자의 과로와 건강을 담보로 한 과도한 속도경쟁을 지양하기 위해서 적극적 소비자 운동이 필요한 시기다. 무점포매장에 대한 야간영업 시간 규제는 소비자의 참여를 통해 확대되는 노동자 보호 방안이 되어야 한다.

발제 2

영업시간 제한을 통한 야간노동 근절 법 개정 방향

송봉준 변호사 (국민입법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으나 무점포판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유통산업에서 무점포판매의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에 반하고, 중소기업인을 보호하는데 미흡하여 유통산업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함.

무점포판매의 확장으로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의 경쟁이 격화되어 익일배송,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배송 서비스 속도 경쟁으로 근로자의 야간노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여 야간노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수많은 연구에서 야간노동은 뇌·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각성 능력을 떨어뜨려 사고유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근에는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야 근로(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의 근로)는 제한하여야 함.

이에 무점포판매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에 대해서는 물류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함(안 제3장의2(제14조의2) 신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의 물류센터와 배송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전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제3장의 2(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 2 무점포판매

제14조의2(전자상거래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무점포판매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이하 “전자상거래등”이라 한다)를 개설하는 자는 물류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전자상거래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등의 물류센터와 배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1. 영업시간의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제1항에 제2의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 2. 제14조의2에 따른 전자상거래등의 개설등록 현황

제4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4조의2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등을 개설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상거래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제52조 제1항 제1호 중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를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제14조의 3 제1항 제1호에”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에”를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 제14조의 3 제1항 제2호에”로, 같은 조 제3항에 제1의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 2. 제14조의2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상거래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상거래등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무점포판매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를 개설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안에 제14조의2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 <p>제3장의2 무점포판매</p> <p>제14조의2(전자상거래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무점포판매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이하 “전자상거래등”이라 한다)를 개설하는 자는 물류시설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14조의3(전자상거래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등의 물류센터와 배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시간의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

제45조(보고)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략)

<신설>

제49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들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보고) ① -----

-----.

1.2. (현행과 같음)

2의 2. 제14조의2에 따른 전자상거래등의 개설등록 현황

제4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생 략)

<신 설>

③·④ (생 략)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신 설>

1.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의2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등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상거래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③·④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 -----

-----.

1. 제12조의2제1항제1호, 제14조의3제1항제1호에-----

2. 제12조의2제1항제2호, 제14조의3제1항제2호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1의 2. 제14조의2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상거래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 | |
|-------------------------------------|--|
| <p>2. ~ 6. (생 략)</p> <p>④ (생 략)</p> | <p><u>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u></p> <p>2. ~ 6.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
|-------------------------------------|--|

토론 1

유통시장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인 보호의 필요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토론 2

유통산업의 변화와 유통법의 한계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코로나 전후 유통산업현황

-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을 계기로, 소매판매액은 제자리걸음이었으나, 온라인쇼핑거래액과 모바일쇼핑거래액은 큰 폭으로 성장
 -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거래액의 비중이 2017년 21.4%에서 2020년 33.6%로 증가
 - 특히 모바일쇼핑거래액이 소매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0%에서 22.8%로 약 2배 증가
- 4차산업혁명을 계기로 비대면으로 변화하던 소비패턴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것이라 할 수 있음

<표> 소매판매액, 온라인쇼핑거래액, 모바일쇼핑거래액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CAGR |
|----------|-------------|-------------|-------------|-------------|-------|
| 소매판매액 | 440,288,001 | 465,004,922 | 473,177,883 | 475,199,970 | 2.6% |
| 온라인쇼핑거래액 | 94,185,765 | 113,314,010 | 136,600,838 | 159,438,356 | 19.2% |
| 모바일쇼핑거래액 | 52,909,341 | 69,205,015 | 87,363,860 | 108,265,942 | 27.0% |

자료: 통계청(2017-2020). 서비스업동향, 온라인쇼핑동향

□ 대기업이 유통산업의 흐름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소유통기업은 변화에 밀려 적

응하려 노력 중

-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그 규모가 축소
 - 온라인 유통: 시장 규모가 나날이 성장하는데, 코로나19로 가속화.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온라인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 오프라인 대형유통기업도 시장 진입을 위해 노력 중(영업일 규제 해제에 노력). 중소기업은 온라인 유통으로의 전환이 더딤
 - 유통환경 변화, 대형유통기업·온라인 기업의 성장은 중소기업에게 부정적 영향
-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경영난 가중
- 「유통산업발전법」
- 유통시장 개방을 계기로 규제완화를 통한 유통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1997년 4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 경제양극화와 대형유통기업 확장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다양한 보호제도가 도입
- 「유통산업발전법」의 보호제도 도입에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던 까닭은 정부정책이 대형유통기업의 확장 제한에만 집중되었기 때문
- 정부가 대형유통기업의 확장을 제한하더라도, 대형유통기업은 보호제도의 범위가 미치지 않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함. 따라서 확장 제한만으로는 한계
 - 또한 확장 제한이 이루어지는 동안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았음

| 주제 | | 내용 | 발의의원(의안번호) |
|------|----------|---|---|
| 균형발전 | 건설·등록 단계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혹은 일정 범위 내 지자체 장과의 합의 및 협의 절차 도입 | 어기구의원 등(312) |
| | | 전통상업보존구역 등 zone 지정 | 이장섭의원 등(311) 어기구의원 등(312) 이동주의원 등(1076) 김정호의원 등(1280) 홍익표의원 등(1347) |

| | | | |
|----|----------|--|--|
| | | | 김성원의원 등(4712) 최승재의원 등(2107558) |
| | |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 김정호의원 등(1280) |
| | |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 평가서 개선 | 이주환의원 등(252) 어기구의원 등(312) 이동주의원 등(1076) 홍익표의원 등(1347) 허영의원 등(5772) |
| | 영업 단계 |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제도 개선 | 이동주의원 등(1076) 홍익표의원 등(1347) 이종배의원 등(2201) 허은아의원 등(4113) 김성원의원 등(4712) 최승재의원 등(5219) |
| | | 등록 소재지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 홍익표의원 등(1347) 박재호의원 등(3236) 김성원의원 등(4712) |
| 진흥 |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통신판매를 할 경우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대상에서 제외 | 고용진의원 등(2110899) |
| | | 중소유통기업의 공동협력사업 및 물류시설의 디지털화 촉진 | 이성민의원 등(3062) |
| |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개선 | 허영의원 등(5772) |
| 기준 | | 준대규모점포 범위 개선 | 이동주의원 등(1076) |
| | | 준대규모점포 프랜차이즈 규제 완화 | 고용진의원 등(2110899) |
| | | 전문상가단지 범위 개선 | 김경만의원 등(1541) |
| | | 식자재마트를 정의 | 최승재의원 등(5219) |
| | | 대규모점포 개설하려는 자와 중소기업 및 이해관계자 사이 금품제공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 김성원의원 등(4712) |
| | | 유통관리사 자격증 악용시 처벌 | 최인호의원 등(2919) |
| | | 중기부로 소관부처 변경 | 김정호의원 등(1280)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21년 11월 기준) 재구성

□ 21대 국회에서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과 관련된 제정안도 발의

- 박홍근의원 대표 발의 「중소유통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중소기업업을 위한 규제와 진흥만을 분리하여 새로운 법으로 제정
- 정태호의원 대표 발의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디지털화에 뒤처진 오프라인 중소기업업을 위한 진흥법

□ 해외입법 동향

-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는 있으나 이들을 위한 별도법 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모두 지역상인 보호를 위해 규제를 하지는 않는데 우리나라와 상권발달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 오히려 노동자 보호와 종교적 이유가 규제 이유

□ 온라인유통 확대의 양면

- 소비자입장에서는 찾아가지 않아도, 언제든 쇼핑이 가능하고,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을 수 있음
-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유통업 종사자의 야간노동 확대 덕분

□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야간노동 문제 해결

-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유통노동자 문제도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연관되므로 유통산업 기본법인 본 법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사료됨
- 해외입법에서도 유통산업 규제의 목적이 노동자보호에 있기 때문에 본 법으로 야간노동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다만, 본 법의 1차적 목적이 유통산업, 유통기업을 발전이므로, 종사자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사료됨
- 즉, 야간노동금지를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해결하려는 아이디어는 좋으나, 유통산업

진행을 위해서는 무조건 금지하는 어려운 일임. 더욱이 업계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시행되어 온 **현행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서도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

- 고용진익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온라인유통의 발전에 발맞춘 영업시간 제한 폐지와 관련됨
- 따라서 야간노동금지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시행하는 방안은 신중히 접근. 그 보다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유통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추진하는 방향이 보다 실현가능하다고 사료됨

토론 3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방향

양창영 변호사 (법무법인 정도)

1. 유통산업의 변화 : 유통과 물류의 결합

- 소비자는 오프라인 구매에서 온라인 구매로 급격하게 이동
- 2020년 2월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을 전년 동월대비로 보면, 음식료품은 59.4 증가하였고, 음식서비스는 75.8%, 생활용품은 46.9% 증가(물류산업 변화 및 근로환경 니즈조사, 한국교통연구원, 민연주 외2, 2020)
- 배송 속도 중심의 차별화로 소비자 Lock-In 효과
- 유통기업은 자체 물류센터를 확보하거나 물류 업체와 제휴
- 아마존의 FBA를 벤치마킹한 쿠팡은 30개 도시에 100여개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인구 70%가 쿠팡배송센터로부터 10km내 거주
- 마켓컬리는 2021. 1.기준 4개의 물류센터 확보, CJ대한통운과 대전, 세종, 천안 등 충청권 지역까지 새벽배송 확대
- SSG닷컴은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활용하면서 이마트 점포를 Pickig&Packing 센터를 구축
- 네이버는 직접물류 대신 외부 업체와 제휴하는 방식
- 플랫폼경제, 풀필먼트, 마이크로 풀필먼트 확대 등 유통산업의 변화는 소유권과 화폐 이전의 수반으로 정의하였던 유통과 상품의 물리적 이전으로 정의하였던 물류의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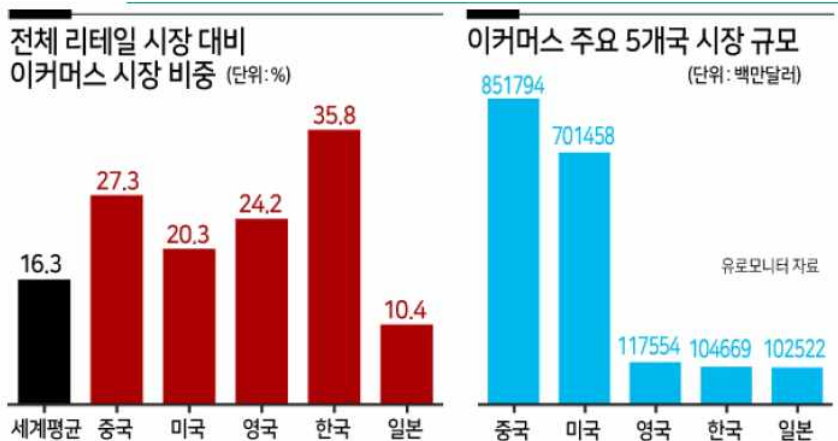
2. 유통산업과 물류산업에 관한 현행 법체계

- 유통산업은 「유통산업발전법」, 물류산업은 「물류정책기본법」이 각 산업진흥법으로 기능
- 유통분야에서는 농수산물 등 특정 상품 유통에 관한 특별법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

- 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중.
-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 시행 중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을 목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021. 7. 27.부터 시행 중
 - 유통산업에서 현행법 체계상 변화한 유통환경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3.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

-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도, 상권영향평가서 사전 제출 등은 오프라인 시장 또는 일부 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한계
- 증가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모색 필요
: 한국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전세계 4위 수준이지만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전체 리테일 시장 규모 대비 이커머스 시장 비중은 한국이 35.8%로 1등. 지난해 161조원을 기록한 국내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올해도 두자릿수 성장을 이어나갈 전망이다(헤럴드경제 2021. 4. 1. 기사, 이커머스전쟁, 물류를 잡는자가 고객을 잡는다).



- 유통과 물류가 결합한 이커머스시장의 증가로 인하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성과와 기능이 약화
- : 이커머스 대기업이 마이크로 풀필먼트 및 퀵배송 시스템으로 골목시장을 누비게 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 종전 제도의 실효성 약화
- : 대기업의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영업시간제한

과 의무휴업일 제도의 실효성 약화

- 신속배달, 당일배송, 새벽배송의 증가로 인하여 종사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하고자 마련한 제도 약화
 - : 종전 오프라인 매장 종사자들이 물류센터로 재배치되어 신속배달을 위한 야간 노동 증가 현상 발생
 - : 현행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서 종사자의 보호 규정(①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 ②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행로, 차량접안시설 등의 공간 및 시설의 충분한 확보 ③혹서, 혹한, 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의 마련)을 두고 있으나, 택배서비스종사자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국한하고 있어서 물류시설내 종사자의 보호는 취약

- 유통과 물류의 결합은 두 산업을 구분하는 전통적 기준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상황인식이 있어야 하고, 변화한 상황에 맞춰 균형발전과 종사자 보호의 과제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제도화 필요

토론 4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산업부